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87

발의연월일: 2021. 2. 18.

발 의 자 : 임이자 · 하영제 · 엄태영

박대수 • 박덕흠 • 백종헌

송석준 · 한무경 · 서범수

추경호 · 홍준표 · 류성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지난 2019년 12월 4명의 학생연구원이 부상당한바, 그 중 2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함. 대학은 연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해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,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하고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 구제에 취약하며 그 규모로 인해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함으로써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임(안 제123조의2신설).

법률 제 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3조의2(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) ①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·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.
 - ②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실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본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④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·소멸 및 변경, 보험료의 산정·신고·납부,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⑥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제 23조의2(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④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심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. ⑤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심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.
	변경, 보험료의 산정·신고·납 부,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

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 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 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 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⑥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 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.